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8-29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5누7237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원고, 피항소인	1. 시 [redacted] 주식회사
	2. 독 [redacted] 주식회사
피고, 항소인	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
제 1 심 판 결	서울행정법원 2015. 11. 27. 선고 2015구합62965 판결
변 론 종 결	2016. 6. 14.
판 결 선 고	2016. 7. 26.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가 2014. 2. 10. 원고 시 [redacted]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취득세 215,384,090원, 농어촌특별세 21,538,390원, 등록세 215,384,090원, 지방교육세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8-29

40,509,950원의 각 부과처분(각 가산세 포함) 중 취득세 860,000원, 농어촌특별세 86,000원, 등록세 860,000원, 지방교육세 172,000원, 신고불성실 가산세 378,390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945,8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4. 2. 10. 원고 독[redacted]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취득세 15,389,080원, 농어촌특별세 1,538,890원, 등록세 15,474,830원, 지방교육세 2,904,400원의 각 부과처분(각 가산세 포함)을 취소한다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5행 "불과하므로" 다음에 "(선급이자를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여 이자의 성격이 변한다고 할 수 없고, 대출과 동시에 토지의 취득이 이루어진 이 사건에서 제1, 2 이자를 토지의 취득 전에 지급원인이 발생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)"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8-29

재판장 판사 최상열

판사 정봉기

판사 조용래